

2026년도 제1회 수치예보센터 공무원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제출서류 안내 공고

수치예보센터 공고 제2026-1호, 제2026-2호에 따른 2026년도 제1회 공무원 근로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수치예보센터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응시분야	근무부서	직급	합격자(응시번호)
현업 수치예보자료 관리·개선(A)	수치예보기획과	연구원(나)	이○○(A-1)
초단기 수치예보 개발 연구(B)	수치예보기술과	연구원(나)	김○○(B-3)
전지구 수치예보 강수물리과정 진단 및 개선 연구(C)	수치예보기술과	연구원(나)	김○○(C-2)
해양기상 수치예보 개선 및 활용 연구(D)	수치예보기술과	연구원(나)	백○○(D-2)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기한: 2026. 3. 17.(화) 18:00까지
- 제출방법: 채용담당자 전자우편(dbs406@korea.kr)
-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자필 서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 ① 이력서(1부) [붙임1]
 - ②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부)
 - ③ 공정채용 확인서(1부) [붙임2]
 - ④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1부) [붙임3]
 - ⑤ 사진(3x4cm) 파일 (1매)
- ※ ① ~ ④ :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 개인별 신원조사는 경찰청 '신원조사업무포털'로 진행

3. 유의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 포기 시, '채용포기서[붙임4]' 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해야 함
- 관련 문의는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채용담당, ☎042-481-7515)로 연락

[붙임1]

이 력 서

1. 인적사항

사진 (3x4)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생년월일	
		영문		성별	
	연락처	자택		e-mail	
		휴대폰		보훈여부	
주소					
병역	<input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면제사유	

2. 학력사항

학교명	학위과정	재학기간	전공	수학구분	비고

3. 경력사항

직장명	직위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4. 자격사항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붙임2]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수치예보센터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인)

수치예보센터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수치예보센터 공무원 등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 가이드」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치예보센터장 귀하

